

2020년도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9.(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
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81건(안전번호 제2020-7602호~801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7602호~761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7613호~7614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직접 받아쓰기한 중국 드라마의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전송한 사안임. 저작권 제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6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1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1,145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전번호 제2020-16633호~17777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1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1,145개의 URL 정보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4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음. 제2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두 안전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함이 바람직해 보임.
- B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A 위원: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다음은 제1호 안전인 회의록 5쪽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실연자명, 6쪽의 저작물명, 게시물명, 출판사명, OSP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D 위원: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은 비공개해야 함.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방송사명, 실연자명, 게시물명, 출판사명, OSP명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13쪽~17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자는 우리말로 번역된 만화를 jpg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jpg 파일의 좌측 상단에 '♡♡♡♡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유출된 불법복제물인 것으로 추정됨.

'♡♡♡ ♡♡, ♡♡♡♡ ♡♡'는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19. 8. 25. 10권까지 출간되었음.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4,500원에, 전자책은 약 2,5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할 수 있음. '♡♡♡♡♡♡'는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19. 10. 2. 6권까지 출간됨.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4,500원에, 전자책은 약 2,700원~3,0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은 '♡♡♡♡♡'에서 2017. 3. 25. 11권까지 출간되었음.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4,050원, 전자책은 약 2,500원에 판매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 ♡♡ ♡♡'는 '♡♡♡♡♡'에서 2020. 2. 25. 5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인터넷에서 약 7,2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은 '♡♡♡♡♡'에서 2019. 8. 25. 14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7,200원, 전자책은 약 4,0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 ♡♡♡'는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19. 8. 30. 7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7,650원에 판매 중임.

(저작물 판매 현황표를 제시하면서)모두 합법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임을 확인하였음. 안전번호 제2020-7602호~7609호 저작물 판매 현황은 해당 표를 참고하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610

호~7611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총 2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과 영화 '♪♪♪♪'를 전송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612호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총 1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웹소설 '♪♪♪♪♪'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전송하였음. '♪♪♪♪♪'는 우리나라 출판사 '♪♪♪♪♪'가 출간한 웹소설임.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대여 또는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7602호~761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결함이 타당함.
- D 위원: 2020-7602호~761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불법복제물을 익명의 민원이 신고한 건으로서 일본 만화, 영화, 웹소설이 불법복제물들임.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602호~7612호는 게

지 등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은 2017. 7. 13.부터 2017. 9. 29.까지 중국 '♣♣♣ ♣♣'에서 방영되었으며, 우리나라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 대여하여 감상 가능함.

중국 드라마 대사를 직접 청취한 후 작성한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전송하는 행위가 드라마 대본, 즉 어문저작물의 공정이용 등 저작권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음. 첫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관해 살펴보면, 게시자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사정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쓰기(dictation)는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둘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해 살펴보면, 원저작물인 중국어 대본은 사실적·정보적 성격이 저작물이라기보다 창조적인 성격의 저작물이라고 할 것임. 이 점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셋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관해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한 저작물은 한 화 전체 분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임. 이는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넷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면, 중국어 대본은 우리말 자막파일인 smi, srt 파일과 달리 불법복제물과 보완재 관계에 있다거나 영상물과 결합한 후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움. 즉 본 건 게시자가 직접 받아쓰기한 중국어 대본이 해당 드라마 동영상 파일의 불법적인 유통 촉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저작권법이 저작권법 위반의 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권법이 민사적 성격이 강하고,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신 활동의 산물로서 그 인격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저작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추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음.

민원인의 신고내용처럼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구체적으로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자막파일이 아닌 중국어 대사 PDF 파일을 전송한 본 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 고의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이고 저작권법 위반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인데 본 건은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점, 본 건 중국어 대본이 해당 드라마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본 건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직접 제작한 중국어 대본을 PDF 파일로 전송한 해당 안건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변형적 이용이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원래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이나 의미 또는 기능으로 원래의 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안건의 경우 자막이 삽입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된 목적일 텐데, 자막만 별도로 추출한 파일의 이용이 주된 목적은 아닐 것임.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처럼 변형적 이용으로써 공정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얼마나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영상저작물에서 자막만 추출하여 PDF 파일로 제공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화 전체 분량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 연극 저작물은 결합저작물으로써 대본, 무대장치, 안무, 음악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됨. 이와 달리 영상저작물에 있어 대본은 별개의 독자적 저

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로도 이해될 수 있음. 즉 중국어 자막 PDF가 한 화 전체 분량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일지라도 대본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음.

- B 위원: 전문위원이 부결로 검토한 논지 중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복제 등의 행위만을 비친고죄로 규정한다는 논지는 적절치 않아 보임. 같은 용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실 내용 및 정황에 따라 법리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용 음반'과 같은 법 제76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달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 이처럼 형사소추에서의 영리 목적과 저작권법에서의 영리 목적은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함. '영리 목적'의 해석에 있어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간접적인 영리까지 포함해서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좁게 해석하고 있음.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복제 등의 행위만을 비친고죄로 규정한다는 논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지난번 시정권고 심의에서 살펴본 안건은 드라마 대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었음. 구체적으로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대본을 제공한 사안이었음. 어문저작물이 데드카피 형일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에 번역자의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해당 안건은 중국 드라마 대본을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이므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음.

- D 위원: 별도의 목적이 수반되었으므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음. 해당 게시물은 중국어 학습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중국

어 대본을 받아쓰기 한 것일 수도 있음.

- B 위원: 해당 안전 가·부결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시 말해 기존 동일·유사 사유 중에 다른 기준과 상충하고 있음.

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대본을 별개의 저작물로 보고 있음. 자막과 영상이 함께 저작물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나 대본 등의 어문저작물은 별도의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물 일부나 전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C 위원: 법리적인 부분은 B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이와 별개로 해당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영상저작물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smi, srt 자막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영상물에 직접 결합하여야 할 목적도 아닐뿐더러 게시자 개인이 싱크로율을 맞춰 영상에 자막 파일을 삽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합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될 우려는 적음.

- B 위원: 해당 안전과 유사한 기존 안전 중 방송 작가 지망생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다수의 대본을 불법 제공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시정권고 가결로 의결한 바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드라마 대본을 다운로드나 복사 기능은 차단한 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 대본들이 유출되어 작가 지망생 웹사이트에 불법으로 공유된 사안이었음.

이와 같이 동일·유사한 형태의 안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일맥상통해야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별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부결함에

크게 이견은 없으나 기존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안건의 대부분은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의 각본에 해당함.

- C 위원: 해당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의견이지만, 법리적 판단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7613호~761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고, 기존 동일유사유형 심의 기준과 상충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가 필요함.
- B 위원: 중국어 대사 PDF 파일을 전송한 본 건의 경우 기존 심의에서 논의된 바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법리적인 부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D 위원: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자료를 보완하여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하겠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613호~7614호는 세부 논의를 위해 자료 보완 후 전체위원회로 회부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615호~8018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만화 '킹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617호는 일본에서는 2006. 5. 19.에, 한국에서는 2007. 12. 15.에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17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56권이 출간되었으며, 아직 미완결임.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4,500원임. '킹덤 1~631화, 외전 포함'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만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621호는 일본에서는 2014. 6. 12.에, 한국에서는 2016. 6. 25.에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일본은 총 13권까지, 한국은 총 12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아직 미완결임.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5,000원임. VR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일본 방송사 'Tokyo MX'에서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1기'를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영하였고, 이어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2기'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됨.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121화'

압축 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음악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7675호는 2018. 10. 2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가수 '영탁'의 앨범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수록되어 있음. 게시자는 '●●●●●'임.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7676호와 안전번호 제2020-7677호의 음악 저작물 역시 각각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7676호~7677호는 각 웹하드 사이트에서 50 포인트, 즉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
- C 위원: 웹하드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는 정액제 상품 충전이 필요한데, 잠재적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제공 게시물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음악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678호는 2020. 2. 2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가수 '방탄소년단'의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7'에 수록되어 있음. '[2020.02.21.] 방탄소년단 - MAP OF THE SOUL 7 [FLAC]'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곡 이용 가능함. 게시자는 제2020-7675호와 동일한 게시자 '●●●●●'임.
(음악 'Paris In the Rain'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7695호는 2018. 10. 8. 미국에서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가수 'Lauv'의 앨범 'I met you when I was 18'에 수록되어 있음. 게시자는 확장자가 'mp3.wma'인 파일을

전송하면서, 게시물 내용에 “파일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파일 이름 뒤에 붙은 ‘.wma’글자를 삭제하시면 MP3파일로 변환됩니다.”라며 확장자를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 C 위원: 필터링 문제로 mp3 파일 업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압축하거나 확장자를 변환하면 업로드가 가능함.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더 킹: 헨리 5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734호는 2019. 10. 23 극장 개봉하고, 2019. 11. 1. 넷플릭스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3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 배급 모두 넷플릭스임. mkv 파일에 한글 자막이 삽입된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작임.

(영화 ‘조조 래빗’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799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0. 4. 7.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mkv 파일에 한글 자막이 삽입된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함.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829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0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7.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2020. 3. 24.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7836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7.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mkv 파일에 한글 자막이 삽입된 파일을 제공하고 있

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년 3월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작품임.
(음악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895호는 2020. 2. 2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 에이드 베스트'에 수록되어 있음. '[미스터트롯] 트롯 에이드 베스트'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음원과 함께 앨범 커버 jpg 파일을 함께 다운로드 가능함. 원곡 실연자는 '김광석'임.

(음악 'WANNABE'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912호는 2020. 3. 9.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가수 'ITZY'(있지)의 미니앨범 'IT'z ME'에 수록되어 있음. '[2020.03.09.] ITZY(있지) - IT'z ME'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7957호는 tvN에서 2020. 3. 12.부터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을 웹하드에서 27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되며 총 12부작인 방송 프로그램으로, 현재 4회까지 방영됨.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1회, 2회, 3회를 제공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7615호~801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7615호~8018호는 무단 복제물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심의대상 모두 불법복제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7615호~801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7613호~7614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0-7602호~7612호, 제2020-7615호~801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0쪽부터 26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633호~17777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5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16.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최승수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